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과장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789호

시행일자 2018. 11. 30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5호(2018. 11. 30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4호, 2018.10.1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
- '희귀난치성질환'을 '희귀질환'과 '중증난치질환'으로 구분
-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
-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

○ 시행일: 2019.1.1.(단, 암,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.2.28.까지 종전 서식 이용)

붙임: 고시개정문 및 Q&A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